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5. 12. 12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5. 12. 19

라. 상정일자 : 1995. 12. 20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 및 부천시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 공포(95. 11. 13규칙 제989호)로 중복된 부분 삭제

나. 주요골자

- 부천시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과 중복된 부분 삭제

(안 제3조 제4항)

- 조례, 규칙, 훈련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중복된 이유는?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중복되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
의결 년월일	95.12.20 (제4차)

제출년월일 : 95. 12. 1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 및 부천시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 공포
(95. 11. 13규칙 제989호)로 중복된 부분 삭제

☐ 주요골자

○ 부천시조례, 규칙심의회운영규칙과 중복된 부분삭제

(안 제3조 제4항)

-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내지 제22항을 제4항 내지 제2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생략)	제3조(결정사항)(현행과 같음)
1. ~3. (생략)	1. ~3. (현행과 같음)
4. <u>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u>	<u>생략</u>
5. ~22. (생략)	4. ~21. (현행 제5호~제22호와 같음)

규칙 제 989 호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실·국장이 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3.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 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전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1973. 7. 1
조례 제8호

개정 1977. 2.28조례 제223호	1989. 7.13조례 제981호
1980. 7.30조례 제411호	1990. 8. 1조례 제1057호
1981. 6. 5조례 제438호	1990.11.22조례 제1067호
1981.10. 7조례 제448호	1991. 2.28조례 제1103호
1982. 4.30조례 제496호	
1984. 2.15조례 제621호	
1985.11.11조례 제732호	
1986. 3.29조례 제755호	
1988.12. 5조례 제916호	

제 1 조(목적) 부천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조(결정사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및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초지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4. 지방세법 제 221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5.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7.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국무총리 훈령 제 138 호에 의한 어선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19.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0.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2.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 4 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 5 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6 조(간사장)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 ② 간사장은 기획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 7 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8 조(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 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793. 7. 1 조례 제 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2. 28 조례 제 22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30 조례 제 41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 5 조례 제 43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10. 7 조례 제 44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30 조례 제 496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5 조례 제 62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1. 11 조례 제 732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29 조례 제 755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5 조례 제 916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13 조례 제 98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1 조례 제 1057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22 조례 제 1067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28 조례 제 110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